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15,087,376	57,452,621
일반회계	1,672,154,392	50,164,632
특별회계	242,932,984	7,287,990
공기업특별회계	170,618,256	5,118,54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4,861,932	745,8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4,179,180	1,925,37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1,577,144	2,447,314
기타특별회계	72,314,728	2,169,442
주택사업특별회계	270,118	8,104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684,376	170,5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2,000	66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801,044	204,031
교통사업특별회계	24,420,033	732,601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3,120,865	993,62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96,292	59,88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89,715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6,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